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832

발의연월일: 2022. 12. 9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강병원 · 김두관

김의겸 · 김홍걸 · 백혜련

이정문 • 전재수 • 조정식

최종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「병역법」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연장 복무 사유 중 "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"의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

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사유 중 "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경우"의 범위를 「군인의 지위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, "정치적 목적을지닌 행위"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"근무시간 중"의 행위로 제한하고자 합니다(안 제24조제2항제2호 및 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1069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정치단체(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한다)에 가입한 경우
- 2의2. 근무시간 중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25조제1항제3호 중 "제24조제2항제1호부터"를 "제24조제2항제1호· 제2호·제2호의2·제3호 및"으로, "제5호"를 "같은 항 제5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했 개 아 제24조(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제24조(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) ① (생략)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경고하여야 하며, 경고 횟 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. 다만. 「병역법」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2. 정치단체(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 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 한다)에 가입한 경우 <신 설> 2의2. 근무시간 중 선거에서 특 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 한 기본법」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3. ~ 5. (생략)

③ (생 략)

제25조(대체역 편입 취소) ① 병 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 입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,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

4. ~ 7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행위를 한 경우
3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25조(대체역 편입 취소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24조제2항제1호·제2호·
제2호의2·제3호 및
가 ㅇ 궁니 게ㄷ늣
<u>같은 항 제5호</u>
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